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기석 의원)

의안 번호	20-156
----------	--------

발의년월일 : 2020. 10. .

발의자 : 김기석,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이민석, 이홍민,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1. 개정이유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 나.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다.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안 제10조제2항)

3. 관계법령

-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20. 10. 16. ~ 10.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

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 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법 제5조----- -----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p>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박준홍
연 락 처	02-3153-9642